

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08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(2021.10.25.)

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

창 원 시 의 회
(경제복지여성위원회)

창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1. 10. 25.

경제복지여성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10. 15. 전홍표 의원 등 21명

나. 회부일자 : 2021. 10. 19.

다. 상 정 및 의결일자 : 제108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(2021.10.25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전홍표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여 창원시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개발·보급·확대,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5조)
- 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강웅기)

◆ **본 개정조례안은**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지속 가능하고 시민체감형 지역에너지 사업성 창출을 위한 “에너지 센터”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
◆ **주요 내용으로는**

○ 에너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5조)

▶ 신·재생에너지 이용·보급사업,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,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등의 업무 추진

○ 에너지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6조)

▶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.

◆ **검토의견으로는**

○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저탄소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, 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인 ‘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6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